

e스포츠 명예의 전당 대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e스포츠 명예의 전당(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관에 대한 원칙을 밝히고, 이를 전시관과 대관자가 상호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전시관의 운영과 e스포츠의 진흥·발전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대관”이라 함은 세미나, 강의, 행사 등을 위하여 기본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임대·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자”라 함은 본 규정을 인정하고 전시관의 대관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③ “전시관”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대관시설) 대관할 수 있는 전시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로비, 이벤트 홀
2. 부대시설: 빔 프로젝터 및 스크린(이벤트 존, 챌린저스 존), 조명 시설, 음향 시설, 무선 마이크(4대), 의자(80개), 테이블(8개), 체험존 PC(4대)
3. 스튜디오 시설: TV, 카메라(3대), 조명(2대), 스위처, 중계석, 크로마키, 송출용 PC, 업저버 PC

제4조(대관범위) 전시관은 전시관의 자체 전시, 교육 및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전시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e스포츠 관련 기업 및 학교, 동호회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e스포츠 선수 팬 사인회 및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전시회 등
3. 인디(창업) 게임 개발사 대상 신작 게임 출시 등 홍보 이벤트, 유저/개발사 간 간담회, e스포츠 테스트베드 행사
4. e스포츠/게임 관련 기자 간담회, 관련 학과(게임 등) 졸업 발표회 행사
5. e스포츠/게임 관련 국가적 행사
6. 기타 전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대관신청) ① 전시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전시관이 별도로 정한 양식의 대관신청서[별표1], 구체적인 행사계획서, 기타 대관심의를 위해 전시관이 요청하는 자료 등을 20일 전까지 전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전시관은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 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시관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훼손시 원상회복명령,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벌칙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관람을 통제하지 아니하며, 관람 통제가 필요한 대관행사는 휴무일 및 운영시간 외에만 신청 가능하다.

제5조의2(시설물 사용전 사전협의) 전시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내용은 [별표2]와 같다.

제6조(대관신청의 제한) 전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2. 전시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
3.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행사의 내용, 수준이 전시관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한 행사
5.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6.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행사
7. 기타 전시관이 대관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7조(대관의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전시관이 전시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8조(대관승인 및 계약체결) ① 전시관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관일수나 내용을 대관신청인과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② 전시관은 대관신청서 접수 후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관신청인에게 E-mail 로 통보한다.

③ 대관신청인은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전시관과 대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9조(대관승인의 변경) ① 전시관은 전시관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대관승인의 취소 등) 전시관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대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대관자가 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반한 경우
4.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한 경우
5.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한 때
6.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

제11조(대관료) ① 대관 승인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정한다.

이용 시간	기본 및 부대시설	스튜디오 시설
오전 추가 시간대 (07:00 ~ 11:00)	시간대 200,000원	시간대 100,000원
기본 시간대 (화~일, 11:00 ~ 18:00)	1일 500,000원	1일 100,000원
야간 추가 시간대 (18:00 ~ 22:00)	시간대 200,000원	시간대 100,000원

※ 부가세 포함

- ③ 한국e스포츠협회 및 e스포츠 명예의 전당 후원 명칭 사용은 e스포츠와 직접 관련된 행사만 가능하며, 운영 사무국의 승인시 기본 시간대 대관료의 50%를 감면한다.
- ④ 휴관일(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 대관 시에는 기본요금의 20%를 할증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사람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전시관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대항하는 사유로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 신청한 사람이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여 관리자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 경우와 제10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무료대관) 운영 사무국의 검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부대시설, 스튜디오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단, 전시관 운영 외 시간에는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협회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로 협회 및 전시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3. e스포츠 관련 학교, 동호회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주최 및 참석자가 초, 중, 고, 대학생이어야 하며 기본 요금 시간대만 적용한다)
4. 기타 전시관이 전시관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3조(대관료의 사용) 전시관 대관으로 인해 발생된 금액은 대관 행사 진행을 위한 실제 비용 지출 및 전시관 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 전시관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대관자가 대관 중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 ② 전시관은 대관자가 제10조에 대하여 대관계약을 취소하거나 행사를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 보상의 책임이 없으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대관시설의 장비결함으로 대관 중지 및 취소된 경우 대관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취소된 당일 강의 건에 대한 대관료 반환으로 한정된다.
- ④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전시관이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15조(광고 홍보물 협의)** ① 대관자는 대관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전시관과 관련된 사항(명칭, 로고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대관자는 광고, 홍보물을 부착·설치 할 경우 전시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따라 게시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철거 될 수 있다. 홍보물의 규격 및 허가절차, 부착기간 등은 별도로 정한다.
- ③ 각종 홍보물 및 부착물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오염은 즉시 대관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④ 전시관은 본 대관과 관련하여 녹화, 방영권 및 홍보 기록용 사진자료를 갖는다.

- 제15조(규정의 해석 및 관할법원)** ① 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 ② 대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시관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 제16조(규정의 해석 및 관할법원)** ① 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 ② 대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시관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02. 01.부터 시행한다.

e스포츠 명예의 전당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관 신청용]

e스포츠 명예의 전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대관 신청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e스포츠 명예의 전당 대관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대관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 필수정보 : 업체(신청자)명, 생년월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대관 신청일로부터 1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대관신청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를 하시는 경우, 대관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	--------------------------

년 월 일

대관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별표1]

e스포츠 명예의 전당 시설 대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주 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사용시설	부대설비	<input type="checkbox"/> 빔 프로젝터 및 스크린 [이벤트 존, 챌린저스 존] <input type="checkbox"/> 조명 <input type="checkbox"/> 음향 <input type="checkbox"/> 무선 마이크 [대] <input type="checkbox"/> 의자 [개] <input type="checkbox"/> 테이블 [개] <input type="checkbox"/> PC [대]		
	스튜디오 시설	<input type="checkbox"/> TV <input type="checkbox"/> 카메라 [대] <input type="checkbox"/> 조명 [대] <input type="checkbox"/> 스위처 <input type="checkbox"/> 중계석 <input type="checkbox"/> 크로마키 <input type="checkbox"/> 송출용 PC <input type="checkbox"/> 업저버 PC		
대관 기간		- 시작일자: 년 월 일 시 분 - 종료일자: 년 월 일 시 분		
행사내용	종류 및 명칭			
	대관 목적			
	반입품의 종류·수량			
	후원 명칭 사용 요청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input type="checkbox"/> 협회, 전시관 후원 명칭 사용 희망		
	주요 내용			
<p>e스포츠 명예의 전당 전시관 대관 규정 및 사용자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e스포츠 명예의 전당 대관규정 제 5조 규정에 의거 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e스포츠 명예의 전당 귀하</p>				

대관 시설 사용자 유의 사항

1. 전시관 운영시간 내 행사 진행 시, 일반 관람객들의 전시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사용자는 대관 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용자는 대관 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대관 시설에 기재된 부대시설 이외의 물품 및 장비는 자체 준비 하여야 한다.
5.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 반입·설치·철거 시는 전시관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부속시설인 영상·조명·음향장치 등 시청각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전시관 직원의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대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설치는 사용자 측에서 직접 진행하여야 한다.
8. 시설사용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전시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시설사용 후 사용자 측은 청소 및 분리수거 등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시설사용 후에는 시설을 사용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 사용자는 화재 예방 등 전시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12.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시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13. 대관 및 관람 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음식물 반입과 애완동물 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홍보관 입장 시 인라인스케이트, 키보드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처리 계통도

	신청자		운영 사무국		주관 기관	
	대관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서 접수 및 대관 승인 안내	↔	대관 요청 확인 및 대관 결정	

신청서 접수: webmaster@esportshistory.kr / 문의: 070-4225-0975

[별표2]

대관시설 사용 등에 대한 사전협의

구 분	사전 협의사항
① 건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부 등의 구조물 설치 시 적재하중의 적정성 협의 · 시설물 마감재 사전 보강 등 · 장비 및 중계차량 임시정차 허용구간 지정 등
② 전기·음향·영상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행사 시의 장비설치 등에 대한 협의
③ 승강기(엘리베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보양자재 사용 및 대여 방법 · 승강기 안전요원 배치 등
④ 안전 및 피난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준비 시 또는 행사 시 안전관리 사항 · 재난 및 화재 시 대피요령 및 대피장소(피난동선) · 소방기구 배치 장소 및 사용 요령 등
⑤ 행사장 청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준공청소 시 관리과 공동 검수사항 · 쓰레기 처리 방안 및 쓰레기통 사용 등
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별표3]

방염대상 물품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라. 압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동립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나. 합판이나 목재
-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